

「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14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개정 이유

리튬배터리는 운송 중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전 세계적으로 항공운송을 꺼리는 추세이나, 우리나라 리튬배터리 생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이용한 리튬배터리를 운송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, 아울러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운송승인 전 제출서류와 생산공장, 포장상태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항공수송을 지원하기 위한 감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리튬배터리 항공운송 승인 전 위험물 운송기준 적합성 판단을 위

한 현장검사 항목의 세부 규정 신설 (안 제12조의 2)

나. 현장점검표 신설 (안 점검표 22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.1.13.(금)까지 국토교통부장관(항공운항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www.molit.go.kr>정책자료>법령정보>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현 행	개 정 안	의 견

나. 보내실 곳

- 1) 일반우편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
(우편번호 30103)
- 2) 전화/팩스: 044-201-4314 / 044-201-5629
- 3) 이메일: goojh80@korea.kr